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4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7.
3. 회부연월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16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② (생략) ¹⁾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u>대차대조표</u>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④ · ⑤ (생략) ²⁾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무상태표</u>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대차대조표는 재무제표의 구성 서류로서 일정 시점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용 재산을 자산의 부분(차변)과 자본·부채의 부분(대변)으로 구분하여 대조시킨 열람표를 의미하는데,³⁾

1) 「지방공기업법」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3) 김홍기, 「상법강의」, 2019.2, p79

기업회계 관련 일반규정들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에서는 이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재무상태표 표현 규정 현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u>재무상태표</u> (「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4 재무제표는 <u>재무상태표</u>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제39조(재무상태표 등) ① <u>재무상태표</u> 또는 연결 재무상태표(이하 “재무상태표 등”이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⁴⁾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4) 국회사무처 법제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 p.31.